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	2020. . .	
연 월 일	(제 회)	

4 · 1 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
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안 제시(안 제2조)

- 1)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9조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잠수사 중 해당 수난구조업무로 인해 사망·부상을 입은 잠수사(사망한 잠수사의 경우 그 유족)로 규정함
- 2)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을 4·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로 직접 발생한 소득감소 금액에 따라 산정함

나.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신청 근거 마련(안 제9조 및 안 별지 제9호의1)

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제출 자료를 명시하고, 민간잠수사용 보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을 신설함. 다만, 보상대상자 해당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를 통해 재확인토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6. ~ 7.) 결과

3) 행정규제
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
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”을 “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4·16세월호참사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하여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잠수사 중 해당 수난구조업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(사망한 잠수사의 경우 그 유족을 말한다)로 한다.

⑥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1. 4·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로 직접 발생한 소득감소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
2. 소득감소 금액은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직전 3년간 소득금액의 평균액[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자

의 수입액 등을 기준으로 법 제5조에 따른 4·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정하는 금액]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

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본문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1 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의 해당여부를 관계부처를 통해 재확인하여야 한다.

1.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종사명령서 등 증빙자료

2. 잠수사에게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

가. 근로소득자인 경우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(월별 명세 필수)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나. 사업소득자인 경우: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3. 부상을 당한 잠수사 중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어 후유장애 등에

다른 수익의 상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상 당시의 후유장해 진단서. 다만, 부상 당시의 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청시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4. 입원·통원 등 치료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치료비 내역서

5. 잠수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및 유족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)임을 증명하는 서류

6.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(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)

7. 그 밖에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별지 제9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보상금 지급신청서(민간잠수사용)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:		접수일:		처리기간:	120일
① 신청인	성명:		주민등록번호:		
	주소(우편번호)				
	연락처	전화번호:			
		휴대전화번호:			
	② 수난구호종사자와의 관계 : 의				
* 신청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에 적습니다.					
③ 수난구호종사자	성명:		주민등록번호:		
	종사업무:		직업:		
	주소(우편번호)				
④ 피해명세 (부상 또는 사망)	발생일시:		발생장소:		
	피해내용:				
⑤ 신청액	금액 : 원정(₩)		※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, 적을 경우 산출명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		
	* 「수상구조법」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관련법 및 지급항목 : 지급일자 및 지급자 : 금액 : 원정(₩)				
⑥ 대리인	성명:		주민등록번호:		
	연락처	전화번호:			
		휴대전화번호:			

본인은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	1.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종사명령서 등 증빙자료 2. 잠수사에게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. 근로소득자인 경우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(월별 명세 필수)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. 사업소득자인 경우: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부상을 당한 잠수사 중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어 후유장애 등에 따른 수익의 상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상 당시의 후유장애진단서. 다만, 부상 당시의 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청시의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. 4. 입원·통원 등 치료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치료비 내역서 5. 잠수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및 유족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)임을 증명하는 서류 6.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(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) 7. 그 밖에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------	---

개인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본인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24조 및 제24조의2,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14조, 「의료법」 제21조에 따라 이 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·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)에서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, 이용·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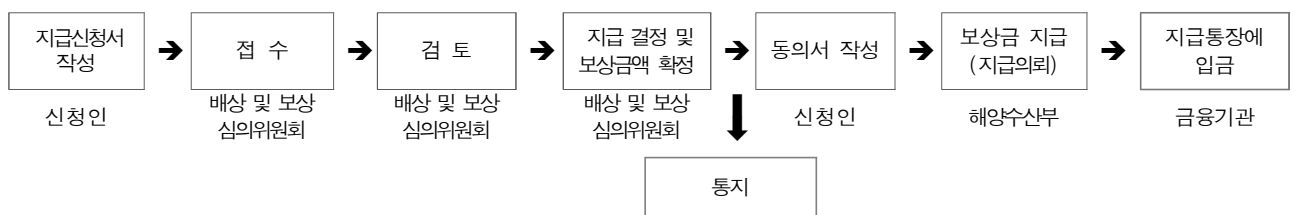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1. ①란 신청인은 보상금 지급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.
2. ②란에는 수난구조종사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. (예: 000의 배우자, 000의 자녀 등)
3. ③란에는 수난구조종사 내용을 적습니다.
4. ④란에는 부상 또는 사망 등의 피해 내용을 적습니다.
5. ⑤란 신청액은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, 적을 경우 그 산출명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또한,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.
6. ⑥란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을 적습니다. 이 경우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

■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[별지 제9호의1서식 별지]

보상금 지급신청인의 표시				
1	성명	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	수난구호종사자 와의 관계	의	전 화 번 호	
	대리인 (선임한 경우)	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	
			휴대전화번호	
2	성 명	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	수난구호종사자 와의 관계	의	전 화 번 호	
	대리인 (선임한 경우)	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	
			휴대전화번호	
3	성 명	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	수난구호종사자 와의 관계	의	전 화 번 호	
	대리인 (선임한 경우)	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	
			휴대전화번호	
4	성 명	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	수난구호종사자 와의 관계	의	전 화 번 호	
	대리인 (선임한 경우)	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	
			휴대전화번호	

작성방법

지급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신청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법정대리인(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)이 신청인○○○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△△△로 적은 후 "서명 또는 날인"하여야 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보상금의 기준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보상금의 기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4·16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활동과 관련하여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잠수사 중 해당 수난구조업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(사망한 잠수사의 경우 그 유족을 말한다)로 한다.</u> <u>⑥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</u> <u>1. 4·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로 직접 발생한 소득감소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</u> <u>2. 소득감소 금액은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직전 3년간 소득금액의 평균액[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</u>
<u><신설></u>	

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9조(보상금의 지급신청) ① (생략)

<신 설>

는 보상대상자의 수입액 등을 기준으로 법 제5조에 따른 4·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정하는 금액]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

⑦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-----

-----.

제9조(보상금의 지급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1 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의 해당 여부를 관계부처를 통해 재확인하여야 한다.

1.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종사명령서 등 증빙자료

2. 잠수사에게 구조 및 수습활동 당시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

가. 근로소득자인 경우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(월별 명세 필수)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나. 사업소득자인 경우: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3. 부상을 당한 잠수사 중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어 후유장애 등에 따른 수익의 상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상 당시의 후유장애진단서. 다만, 부상 당시의 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청시의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4. 입원·통원 등 치료 기간을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
심의위원회는 「전자정부법」
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
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
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·
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
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
신청인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표
등본·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
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
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증명할 수 있는 치료비 내역서

5. 잠수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및 유족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)임을 증명하는 서류

6.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(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)

7. 그 밖에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③ 제1항 및 제2항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배보상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0 - 6281